CHUNGBUK NATIONAL UNIVERSITY
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협회와 충북대학교간의

업 무 협 력 협 정 서

본 협약서는 ○○○○○○와 충북대학교 양 기관의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에 관한 합치된 의사를 근거로 체결되었다.

제1조 (협약의 목적)

당 협약의 목적은 ○○○○○○와 충북대학교가 ○○○○○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재를 양성 및 취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, 고용촉진, 고용안정 등 상호간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에 관한 합치된 의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유효기간)

당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3년간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본 협약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간 협의·동의를 거쳐 서면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한다.

제3조 (협의사항)

1. ○○○○○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/도출에 대해 상호간에 협력한다.
2. 교육생 선발 및 ○○○○○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시에 상호간에 협력한다.
3. ○○○○○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인정(1학점 이상)으로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상호간에 협력한다.
4. ○○○○○ 지원정책 수립 시 기획·조정·분석·평가 및 기초연구조사에 대하여 상호간에 협력한다.
5. ○○○○○을 위한 세미나, 교육프로그램 홍보, 관계자 연수 등에 대해 상호간에 협력한다.
6. ○○○○○을 위한 기타 사업의 협력추진을 위하여 상호간에 협력한다.
7.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상호간에 협력한다.
8. 두 기관은 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고, 필요시에는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.
9. 기타 협력사업 추진 및 협조를 위하여 상호간에 협력한다.

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 년 월 일

KOSA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	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
협회장 ○ ○ ○	총 장 ○ ○ ○

A creative community at the heart of Korea